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10

(2016. 2. 1)

**마포구의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월 21일(목)
- 제 출 자 : 이필레 의원 외 8명

##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월 21일(목)

## 4. 관계법규

-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13조의3(할인)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정이유 >

마포아트센터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어르신 건강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마포아트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 3)

- 제13조의3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동 조례안 제13조의2(할인)제1항에서 마포아트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중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대상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안은 2016.1.25.~1.29.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고, 담당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마포아트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에는 동의하나, 다만 감면 할인에 따른 마포문화재단의 수익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르신 이용료 할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 **어르신 이용료 할인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20%할인시	30%할인시	50%할인시
40,000천원	60,000천원	96,000천원

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계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타 자치단체 대관료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마포문화재단의 대관료를 서울시내 유사시설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예산 보전 대책 :**

① **제1안 : 어르신이용료 20%할인**

아트홀맥·플레이맥 대관료 20%인상 ▶ 48,000천원 수입 보전

② **제2안 : 어르신이용료 30%할인**

아트홀맥·플레이맥 대관료 30%인상 ▶ 60,000천원 수입 보전

○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각종 어르신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하나로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 시설의 종류 등) “별표1”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어르신 이용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서울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총무아트홀 등 강습료(사용료)를 5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 마포아트센터도 마포구민체육시설과 같이 공공시설인 만큼 어르신 이용요금을 동 조례에서 50% 이내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이번 조례제정은 최근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위한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나, 마포문화재단은 자체 프로그램 수입과 구의 보조금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방식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용료 할인에 따른 재단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담당부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대관료 인상 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타 자치구 및 재단 대관료 등과 형평성 있는 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우리 구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대관료 인상률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대관료 인상(20%, 25%)시 재단수입은 당해연도(1차년도)는 증가하게 되나, 대관료 수입은 한번 정해지면 매년 계속 인상할 수 없으므로 고정적인 수입인 반면에, 65세 이상 어르신 평균 증가율이 3% 인 점을 감안하면 할인에 따른 재단 손실액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다음연도인 2차년도부터는 계속 증가되는 어르신 평균 증가율 3% 인상분 만큼 마포구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더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수정할 사항으로는 어르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동 조례안 제 13조의3(할인)제10호 조문 중 65세 이상 “노인”을 “어르신”으로 수정하고, 재단 프로그램 이용료 65세 이상 어르신 감면율(20%, 30%, 50%)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대관료(20%, 25% 등) 인상 시 동 조례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제1항 관련 “별표(마포아트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 대관료 20% 인상 시

(별표) 1.시설사용료 나.개별기준						
(1) 대공연장(아트홀 맥) 사용료						
구 분	변경	클래식 국악	연극,무용, 재즈,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방송 (촬영)	행사
기본 대관료	현재	5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수정	600,000	960,000	1,200,000	1,440,000	1,680,000
(2) 소공연장(플레이 맥) 사용료						
구 분	변경	클래식 국악	연극,무용, 재즈,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방송 (촬영)	행사
기본 대관료	현재	200,000	250,000	300,000	400,000	500,000
	수정	240,000	300,000	360,000	480,000	600,000

## 2. 대관료 25% 인상 시

(별표) 1.시설사용료 나.개별기준						
(1) 대공연장(아트홀 맥) 사용료						
구 분	변경	클래식 국악	연극,무용, 재즈,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방송 (촬영)	행사
기본 대관료	현재	5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수정	625,000	1,000,000	1,250,000	1,500,000	1,750,000
(2) 소공연장(플레이 맥) 사용료						
구 분	변경	클래식 국악	연극,무용, 재즈,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방송 (촬영)	행사
기본 대관료	현재	200,000	250,000	300,000	400,000	500,000
	수정	250,000	312,500	375,000	500,000	625,000

#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46호, 2015.12.29., 일부개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타법개정]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 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 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문입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1.06.09 조례 제822호

(일부개정) 2015.04.16 조례 제989호

(일부개정) 2015.11.19 조례 제102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명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3. 사용료 전액 면제 :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1. 계절별·시간대별 취약 프로그램 이용자

2. 월 2개 이상 프로그램 이용자

3.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이용자

③ 토요일·공휴일 또는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④ 체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정 1988.05.01 조례 제14호]

전문개정 2002. 1.15 조례 제503호

개정 2002.11.01 조례 제523호

(일부개정) 2007.05.03 조례 제 658 호

(일부개정) 2008.09.23 조례 제 717호

(일부개정) 2009.03.19 조례 제741호

(일부개정) 2013.12.26 조례 제944호

(일부개정) 2015.11.19 조례 제102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  
험료 지원 조례

**제13조의3(할인)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 등록자
2.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2급 및 3급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본조 신설 '02.11.1, 개정 2007.5.3>

##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손실액추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할인시	40,000	41,200	42,436	43,709	45,020	212,365
30%할인시	60,000	61,800	63,654	65,563	67,530	318,547
50%할인시	96,000	98,880	101,846	104,901	108,049	509,676

※ 매년 65세이상 어르신 증가 3%반영

#### 2.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대관료 20%인상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대관료 25%인상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현재 시설 사용 한계에 도달하여 회원수 증가 또는 대관일수 증가 곤란